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4월 09일

남원시 조례 제 1482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증 규칙」”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5항 전단 중 “공무상 제18조에 따른”을 “공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

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제23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연가일수”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항제1호 중 “제18조제2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7항 및 제1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⑰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 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⑱ 만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4장(제27조부터 제27조의2까지) 및 제5장(제28조)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및 별표 4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u>10</u>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외증조부모	1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 형수, 동생, 제수)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삼촌, 숙모, 처삼촌, 처숙모)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 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8조의2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 (즉, 호봉확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 1일 가산

- 유사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의2(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시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시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p>	<p><삭 제></p>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원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부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

<삭 제>

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생략)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3
6월 이상 1년 미만	6
1년 이상 2년 미만	9
2년 이상 3년 미만	12
3년 이상 4년 미만	14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12조(복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

<삭 제>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 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④ (생략)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시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는 친족의 경조사로 한정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⑤ 공무상 -----

<삭 제>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 제>

<삭 제>

연도의 휴직기간에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 - 해당 연도 휴직기간(월))/12월 * 해당 연도 연가일수,

③·④ (생략)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

③·④ (현행과 같음)

<삭제>

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
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
검진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
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
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
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
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생략)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그 출
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
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
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

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
음)

<삭 제>

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생략)

④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③ (현행과 같음)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삭 제>

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⑥ ~ ⑧ 삭 제

⑨ (생 략)

⑩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

⑪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⑨ (현행과 같음)

⑩ -----

- 연가일수-----

----.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삭 제>

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⑮ · ⑯ (생략)

<신설>

<신설>

제 4 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27조(영리업무를 금지) 공무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해당 자치단

⑮ · ⑯ (현행과 같음)

⑰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 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
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⑱ 만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
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
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보
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삭제>

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해당 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7조의2(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

<삭 제>

한다.

제 5 장 정치운동

제28조(정치적 행위) ①법 제57조

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및 그 밖에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 2. 정당 및 그 밖에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삭 제>

<삭 제>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및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및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이
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4월 09일

남원시 조례 제 1483 호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함파우 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체험프로그램 운영) 체험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프로그램별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남원시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앞에 “제3장 위탁 운영”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험 및 연수시설 사용료(제7조 관련)

구 분	4시간 기준			비 고
	대 관	냉 방	난 방	
체험·연수시설	50,000	15,000	15,000	1. 4시간 초과 사용시 1시간당 10,000원 추가 2. 숙박객은 냉, 난방료 감면

한옥 숙박 체험시설 사용료(제7조 관련)

구분	전용면적	주 중	주 말	비 고
한옥숙박 체험시설	2인실(15.84㎡)	50,000원	60,000원	2인실 : 1실 4인실 : 2실 6인실 : 4실 8인실 : 1실 10인실 : 1실
	4인실(21.78㎡)	70,000원	80,000원	
	6인실(24.30㎡)	90,000원	100,000원	
	8인실(33.75㎡)	110,000원	130,000원	
	10인실(37.80㎡)	130,000원	150,000원	

- ※ 1. 주말이란 금·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하루 전일을 말함
 2. 수학여행단, 농악 캠프 참가자는 사용료 별도 적용 가능
 - 학생(초, 중, 고, 대학생) : 1인당 10,000원
 - 일반인(기업, 교원 연수생 등) : 1인당 20,000원 이하

농악캠프장 사용료(제7조 관련)

구분	기준	운영 실수	기준 인원	이용료(원)		비고
				주중	주말	
농악캠프장	단체실	4실	30	350,000	380,000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u>제3장 위탁 운영</u></p> <p>제14조(수탁자의 선정) ① <u>시장은 소리체험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u></p> <p>② <u>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u></p> <p>제15조(협약체결) <u>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수입조치,</u></p>	<p><u>제7조의2(체험프로그램 운영) 체험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프로그램별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남원시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u></p> <p><u><삭제></u></p> <p>제14조(수탁자의 선정) ① <u><삭제></u></p> <p><u><삭제></u></p> <p><u><삭제></u></p>

예산지원액, 위탁기간, 시설의 관리책임,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협약을 문서로서 체결하고, 반드시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 관광발전을 도모하고 소리체험관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 및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2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④ 소리체험관의 일상적인 유지
· 보수는 수탁자가 시행하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 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

<삭 제>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다.

⑤ 수탁자가 직접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제18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소리체험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지원) ①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경비 지원시 수탁자는 시 회계연도 개시 100일 전까지 소리체험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후 수탁자의 변경이 있으면 새로운 계약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9조(민·형사상 책임) ①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시설물과 재산을 파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제19조(민·형사상 책임) ① <삭 제>

② 수탁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건·사고에 민·형사

<삭 제>

상의 책임을 진다.

③ 시장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손해배상과 관련된 비용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삭 제>

제20조(양도금지) 수탁자 및 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관리권·운영권 및 사용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전대(轉貸)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삭 제>

제21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따른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증명서를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22조(사무편람) 수탁자는 수탁 사무의 종류별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의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람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제23조(협약이행) 수탁자는 협약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에서 정한 금액을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원본을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24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소리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제2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지도감독) ① <삭 제>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보고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을 상주(常住)하도록 할 수 있다.

<삭 제>

③ 시장은 수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회계검사를 포함한 감사를 실시하여

<삭 제>

야 하며, 제3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제3항의 감사 및 평가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또는 협약을 위반하거나 관계법규에 따른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 2. 법인의 해산, 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 3.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관리, 운영 기능을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개

<삭 제>

제26조(위탁의 취소 등) ① <삭 제>

- 조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
- 5. 주민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 6. 그 밖의 공익상 이유로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4월 09일

남원시 조례 제 1484 호

남원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서원이 남원시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2. “서원”이란 조선 중기 이후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향교·서원으로 국가 또는 전라북도에서 지정한 문화재 및 시에서 지정한 향토문화유산으로 한정한다.

제4조(지원 사업)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
2. 향교·서원과 관련된 전시·공연 및 한시·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
3.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
4. 강학·전통문화예술·전통예절·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서원 환경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서원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4월 09일

남원시 조례 제 1485 호

남원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12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남원시 총무국장, 관광과장, 안전경제건설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광, 사회복지,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및 관광약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관광과 관광진흥담당 이 간사가 된다.

제7조(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 2.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하는 경우
- 5.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6.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 확충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정보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4월 09일

남원시 조례 제 1486 호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11호에 따른 사람 또는 유족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1명)

제3조 제1항 제2호 중 “제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무공수훈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는”을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까지,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는”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6.25참전유공자는 월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남 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 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p> <p>1.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 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로 서 같은법 제6조에 따른 참전 명예수당 또는 「<u>고엽제후유의 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u>」 제7조의3에 따 른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사 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p> <p>2.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u>」 제4조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무공수훈자 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 른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 함)</p> <p>3.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u>」 제4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 1 명(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p>	<p>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 ----- ----- -----.</p> <p>1.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u>」 제4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11호에 따른 사람 또는 유 족(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 위 유족 1명)</p> <p>2. ----- -----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는-- ----- ----- -----</p> <p><삭 제></p>

위 유족 1명에 한정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 중 상이 등급 7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한 전상군경·공상군경의 배우자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는 사람

<삭 제>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는 사람(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1명에 한정한다.)

<삭 제>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하되, 국가유공자는 월 6만원, 그 유족에게는 월 5만원으로 한다. <후단 신설>

③ -----

----- . 다만 6.25참전유공자는 월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4월 09일

남원시 조례 제 1487 호

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구축 및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돌봄 아동”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말한다.

제3조(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다함께 돌봄센터(이하 “돌봄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돌봄센터 입소 우선순위) 시장은 돌봄센터 이용아동 신청이 많은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가정, 다자녀가구, 다문화가족,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입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5조(돌봄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돌봄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돌봄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돌봄센터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돌봄센터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돌봄센터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
2. 돌봄 시설 관계자
3. 돌봄 시설 이용아동 학부모 대표
4. 아동 돌봄분야 전문가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돌봄센터 업무담당으로 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의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고 「남원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원시 지방보조

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4월 09일

남원시 조례 제 1488 호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경영 안정을 위한 기업육성
- 9. 기술 및 기능 인력의 원활한 수급
- 10.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기업 활동 지원) 시장은 기업의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1. ~ 7.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12조(기업 활동 지원) -----</p> <p>-----</p> <p>-----</p> <p>-----.</p> <p>1. ~ 7. (현행과 같음)</p> <p><u>8. 경영 안정을 위한 기업육성</u></p> <p><u>9. 기술 및 기능 인력의 원활한 수급</u></p> <p><u>10.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u></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농업인 상생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를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4월 09일

남원시 조례 제 1489 호

남원시 농업인 상생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농업인들의 정보교류 및 도·농 교류의 장 활용과 농업인 및 농업·농촌관련 단체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립된 남원시 농업인 상생플랫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명칭 : 남원시 농업인 상생플랫폼(이하 “상생플랫폼”이라 한다)
- 2. 위치 :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309

제3조(시설물) 상생플랫폼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단체사무실
- 2. 다목적실
- 3. 소회의실

제4조(기능) 상생플랫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농업인단체 사무실

- 2. 농업관련 학술, 교육, 회의, 행사개최 등
- 3. 농업·농촌 관련 단체들의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소

제5조(사용허가 등) ① 농업인 단체사무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③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가 농업·농촌관련 교육 및 행사 등 공익적 목적으로 다목적실과 소회의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고,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4월 09일

남원시 조례 제 1490 호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콜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로 운행되는 택시를 말한다.
2. “행복콜택시 운행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이란 마을회관과 버스승강장의 거리가 500m 이상인 마을을 말하며, 교통여건 및 수요상황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을 포함한다.

제3조(이용대상) 행복콜택시 이용대상은 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제4조(운행방법) ① 행복콜택시 운행구간은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 또는 마을회관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한다.

- ② 행복콜택시 운행방법은 행복콜택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사전에 요청한 일자와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마을대표자, 읍·면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이용요금 및 지원) 이용자는 행복콜택시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한다)에게 별표 1에 따른 요금을 부담하고, 시장은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6조(비용신청 및 지급) ① 운전자는 이용자가 탑승 월에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를 근거로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콜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전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콜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운전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지원 중단 및 회수) ① 시장은 대상마을이 마을도로 여건의 개선으로 시내버스 등이 운행되거나 그 밖에 교통서비스가 개선되는 경우 비용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전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행복콜택시” 이용자 부담요금

구 분	이용자 부담요금
회관에서 승강장 또는 읍면 소재지까지	500원 / 1회당

※ 이용요금은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택시 1회당 주민이 부담하는
요금임.

[별지 제1호서식]

행복콜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

- 1. 마을명 :
- 2. 신청자(대표자)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3. 운행기간 :
- 4. 지원신청액 :
- 5. 지급계좌

순 번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지급액	비 고

상기 금액을 지원신청하오니 위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 첨부 1. 행복콜택시 운행일지
- 2. 행복콜택시 요금 산출내역서

남원시장 귀하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4월 09일

남원시 조례 제 1491 호

남원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혈 권장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 장려"란 헌혈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헌혈활동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헌혈 장려사업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 장려 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남원시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남원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헌혈 권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대표
2.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적십자 혈액원 등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관계자

제7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헌혈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12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헌혈자와 헌혈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게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헌혈 장려와 헌혈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상품권, 간식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고, 헌혈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4조(관련 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 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4월 09일

남원시 조례 제 1492 호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활동 또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일반인의 모범이 되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남원시 소속 공무원 또는 기관(우수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단체에 행한다. 다만,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

- 1. 의회운영에 헌신한 공적이 있는 경우
- 2. 남원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지역사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시민의 모범이 되는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 또는 행사 주최자의 추천에 의하여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예,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8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남원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수상자에 대하여는 의회 국내·외 연수 및 방문시 동행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남원시 의회포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소집한다.

⑥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심사의 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 및 상장의 경우에는 그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기관·단체장 또는 사무국장이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4조(수상자 명부의 등재) 포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원시의회 포상규정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표 창 장</p> <p style="margin: 5px 0;">주소 또는 소속 직 성 명</p> <p style="margin: 10px 0;">(표 창 문)</p> <p style="margin: 10px 0;">년 월 일</p> <p style="margin: 20px 0; text-align: right;">남 원 시 의 회 의 장 ○ ○ ○</p>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감 사 장 (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 명

(감 사 문)

년 월 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 ○ ○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 명

(상 장 문)

년 월 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 ○ ○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심 사 의 결 서

	소 속 (주 소)	직 위	성 명	공적개요
공적심사요구자				
인 적 사 항				
의 결 주 문				
이 유				
<p>년 월 일</p> <p>남원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p> <p>위 원 장 인</p> <p>위 원 인</p> <p>위 원 인</p> <p>위 원 인</p> <p>위 원 인</p>				

※ 공적심사대상이 많을 경우 그 명부를 별첨할 수 있다.

[별지 제5호 서식]

공 적 조 서

(앞 면)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입하여 주십시오.

주요 학력 및 경력			
㉑년 월 일	㉒이 력	㉓년 월 일	㉔이 력
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 기록)			
㉕년 월 일	㉖내 용	㉗년 월 일	㉘내 용
㉙공 적 사 항			

